

규정 코드	A09(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)	최종 제.개정일
규정 명칭	국가대표 선발규정	2011. 9 제정 2013. 4. 01 개정 2014. 3. 29 개정 2015. 3. 21 개정 2016. 1. 23 개정 2017. 1. 07 개정 2017. 9. 09 개정 2019. 4. 07 개정 2020. 5. 23 개정

A09 국가대표 선발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가대표의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를 말한다.

② 국가대표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의2호에 따른 대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 또는 “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”(이하 “연맹”이라 한다)이 국제대회(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)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·확정한 사람을 말한다.

③ 국가대표지도자는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 기간 동안 국가대표선수를 지도·관리하기 위해 연맹에서 선임한 감독 및 코치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연맹에서 실시하는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제4조(국가대표 선발 및 승인) 연맹에 의하여 종목별 국제대회에 파견되는 선수와 지도자는 종목별 선발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종목별 국가대표의 자격을 갖는다.

제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.
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연맹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
-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행위로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(다만,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영구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)

5. 성추행,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선수 또는 지도자가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(다만,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영구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)
6. 연맹에서 승부조작, 불공정 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수수, 국가대표 훈련비 횡령)와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
7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

제6조(성실의무 및 품위유지)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,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선발에 관한 사항
2. 기술훈련의 실시, 국가대표에 대한 지도, 감독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
3.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한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명
 2. 부위원장 3명 이하
 3. 위원 5명 이상 15명 이하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- ②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 출신 1명, 지도자 1명, 시·도 연맹 임원 1명, 비경기인 1명, 여성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.
단 Foot O이사, MTB이사, Ski이사, Trail이사는 자동위원이 된다.<[단서조항신설 2020.5.23.](#)>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특성에 따라 세부종목 또는 남녀를 구분하여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도 각각의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구성요건) ①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- ② 회장과 친족인 사람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)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해당 종목의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.<[삭제 2020.5.23.](#)>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~~지도자 및~~<[삭제 2020.5.23.](#)> 선수 선발기준 확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련 위원회 회의를 통해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결의를 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③ 제1항의 위원회 참석위원은 회의록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.<[제14조에서 이관 2020.5.23.](#)>

제11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2회의 임기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나, 국제스포츠 기구의 임원이거나, 국제기구 진출 시 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2조(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)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연맹(이사회 포함)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2020.5.23.>

② 1항에 불구하고 선임이 늦추어지는 경우 지방연맹의 추천을 의뢰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.<신설2020.5.23.>

③ 임용(재임용) 대상자는 인적, 경력(오리엔티어링),<개정 2020.5.23.>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평가와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) 국가대표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대표선수의 훈련 및 관리
2.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
3. 국가대표의 국제대회 파견 시 인솔
4.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
5. 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, 감독
6.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

제14조(국가대표선수 선발) ① 국가대표선수는 (별지-1)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선발일정 등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② 국가대표선수 선발 기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첫 선발대회 1개월 전까지 연맹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제연맹의 대회 관련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 이때 선발기준 공지 지연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 대상이 되는 선수의 지도자 등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5조(국가대표 선발 검증 강화) ① 1년 결산의 성적을 총체적으로 공지한다(성적 누계와 순위).<개정2020.5.23.>

② 이후 7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도록 한다.<개정2020.5.23.>

③ 위 절차를 통해 확정된 최종 명단을 공지한다.<개정2020.5.23.>

제16조(불공정 행위) ①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수수 등)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즉시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기준 미달자 등 부정 선발된 선수는 즉시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7조(자료의 보관) 국가대표 선발기준, 과정,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

하며, 이의제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(선발결과 기록지, 분석지 및 회의록 등)는 최소 5년간 보관(관리)하여야 한다.

부 칙 (2019. 4. 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020.5.23.개정하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“(구)각 위원회 및 국가대표급 선발규정”에 따라 시행된 시행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될 것으로 본다.<삭제/2020.5.23.>

<별지-1>

(국가대표 선발규정)
국가대표선수 선발 및 지원 기준

1. 선발전

- 가. 선발전은 연맹의 종목별 공인대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선발전을 개최할 수 있다.
- 나. 선발전은 위원회에서 대상 대회를 지정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.

2. 파견대회

- 가. 파견대상 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(WOC, WTOC), 아시아선수권대회(AsOC, AsTOC),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(AsJYOC)로 한다.
- 나. 일회성으로 추가 파견이 필요하거나 파견대상 대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다.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는 사전에 대회요강 및 신청서를 연맹 사무처에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후 회장의 승인을 받아 출전할 수 있다.
- 라. 다행의 경우 전액 자비부담으로 하며 국가대표 출전기록 및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3. 선발인원

- 가. 선발인원은 파견대회의 팀레이 1팀 이상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회별 선발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- 나. 선발인원(**우선선발**)의 2배수에 해당하는 순위까지 예비선수(**예비선발**)로 선발하고, 선발된 선수가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선수를 선발한다. <**명칭개정 2020.5.23.**>
- 다. 나항의 경우에 따라 선발된 경우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 한다.

4. 선발기준

가. Foot 오리엔티어링

- 1) 선발 클래스는 아래와 같다.<**일부개정 2020.5.23.**>
 - 가) 성인대표는 M21E, W21E
 - 나) 청소년대표는 M/W20E, 18E, 16E
 - 다) 주최국의 대회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2) 선발대회 횟수 기준은 아래와 같다.<**문안수정 2020.5.23.**>
 - 가) 성인대표는 상위 5개(상위 기록 합산)

- 나) 청소년대표는 상위 4개(상위 기록 합산)
 다) 참가 개수가 미달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.
 라) 연말 기준 마감하여야 할 경우 가, 나 항의 개수가 미달(최소 가. 3경기, 나. 2 경기)하였다면 위원회의 결정으로 마감할 수 있다.<신설 2020.5.23.>
- 3) 선발점수는 해당클래스 국내선수 1위 기록자의 경기시간(초)을 선발대상자의 경기 기록(초)으로 나누어 계산한다.
 - 선발점수=국내선수 1위 경기기록(초)/대상자 경기기록(초)×1,000
- 4) 선발전 경기의 구분
 각 종목별 Sprint와 Forest(Middle, Long)으로 구분한다.<문안수정 2020.5.23.>
- 5) 세계선수권대회(WOC) 선발점수 계산<경기명칭개정 2020.5.23.>
 가) Sprint 대상 선수 선발-개최년도 전해에 5회 선발점수로 합한 점수로 한다.
 5,300점 만점
 나) Forest 대상선수 선발-개최년도 전해에 5회 선발점수로 합한 점수로 한다.
 5,300점 만점
- 6) 아시아선수권대회(AsOC, AsJYOC) 선발점수 계산
 가) 성인대표 : Sprint 2경기+Middle, Long 3경기 (5,300점 만점)
 나) 청소년 대표 : 경기방법에 관계없이 각 순위별 배정 점수를 주어 클래스별 최상 위 점수자로 한다. <신설 2020.5.23.>
 나-1) 점수 배정은 클래스별 1위 20점으로 하여 하위 2점씩 하향으로 점수를 부여한다. <신설 2020.5.23.>
 나-2) 최소 한해 동안은 동일한 클래스에만 참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5.23.>
- 7) 각 선발대회에서 선발 클래스별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자로 하며, 참가 의사가 확실한 자로 한다.<신설 2020.5.23.>
- 나. Trail 오리엔티어링**
- 1) 선발전 클래스는 E 또는 A로 하며 페랄림픽(Para)과 오픈(Open) 클래스를 구분한다. 다만 각 클래스가 3인 이하인 경우 통합 한다.<다만. 문안 신설 2020.5.23.>
 - 2) 해당기간 전체 선발전 대회 경기기록 중 상위 점수 3개 경기기록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.
 - 3) 선발점수는 해당 클래스의 경기별(PreO, TempO) 국내선수 1위는 1,000점, 차 순위부터 2점씩 차감하고, 경기별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한다. 다만, 동점자의 경우에는 PreO 점수를 우선 한다.
 - 선발점수=PreO 점수+TempO 점수
 - 4) 2회 이상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가 해당 선발전 운영으로 인해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위 2개 대회 선발전 점수의 평균점을 부여한다.
 - 5) (경과 규정) 부득이 파견 결과 선정된 대회 횟수가 3개가 부족한 상태로 파견 할 때는 현재 개최된 횟수에 2019년 종료한 대회(WTOC2020파견 목적)의 부족한 횟수 성적을 더해 선발 할 수 있다.<신설 2020.5.23.>

5. 지원기준

- 가.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국가대표선수, 국가대표지도자가 해당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.
- 1) 지원금: 연맹의 예산으로 지원하며, 세계선수권대회 50만원, 아시아선수권대회 30만 원 한도
 - 2) 단체복: 연맹의 예산으로 지원(4년간 유효)
 - 3) 후원금 및 후원물품: 연맹을 통한 지정기부금 또는 후원물품으로 추가 지원
- 나. 일회성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.
- 다. 국제대회 파견이 확정된 선수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파견대회에 불참하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.
- 라. 국가대표 선수가 기술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지원금 20%를 삭감한다.
- 마. 국가대표지도자는 대표팀의 공식경기가 없는 날에 한하여 개인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.

6. 결과보고

- 가. 국가대표지도자는 대회종료 1개월 이내에 국제대회 참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보고서에는 경기결과, 경비지출 내역, 문제점 및 발전방안, 참가소감, 대회수집자료 등을 포함하며, 필요 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.